

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09.4.7>

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의 회수·재활용 관리대장								
제품·포장재명: (단위: kg, ℓ, 개)								
연 월 일	① 회 수 내 용		처 리 내 용					④ 보관량
	업 체 명	회 수 량	② 재 활 용		③ 그 밖 의 사 항			
			방법 및 기 준	재 활 용 량	업체명	처 리 방 법	처리량	

<작성요령>

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·포장재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.

-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를 수거한 업체명, 회수량을 적습니다.
- 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, 재활용량을 적습니다. 다만, 재활용량은 재활용제품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, 처리방법(예: 소각, 매립, 재활용), 처리량을 적습니다.
-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